

범죄피해자의 정보권보장을 위한 방안

양경규*

요 약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분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Guarantee of Criminal Victim's Information Rights

Yang Kyung Kyoo*

ABSTRAC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trial reveal the truth regardless of civil trial or criminal trial. The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amended to guarantee victims the right to attend court hearings, to receive information about the progress of their case. But the new Criminal Procedure Law 2007 stipulated merely reading right of investigation records after prosecution while reading and printing rights prior to prosecution were not legislated. All sections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must ensure that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offender should not increase the distress or add to the problems of victims of crime in secondary victimisation. Reading and printing rights of prior to prosecution should be stipulated at earliest to protect the criminal victims and to prevent the secondary victimis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actically protect the right of the victims on the criminal procedures.

Key words : 소송기록열람등사권, 정보제공권, 피해자보호, 범죄피해자, 신문조서 reading and printing rights, information rights, protection of victims, crime victims, investigation records

접수일(2013년 9월 30일), 수정일(1차: 201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2013년 10월 21일)

*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1. 서 론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각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각 사건을 심리하여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즉,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장이 원피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들어보고,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모두 살펴 당사자 중 누구의 주장이 맞고 누구의 주장이 틀린지 그 진실을 가리는 것이 민사소송의 가장 핵심된 사항이고, 형사소송에서는 재판장이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과 증거자료들을 모두 살피고 또 그 상대방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제출한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들을 모두 살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형사소송의 가장 핵심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¹⁾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재판과정이 존재하고, 민형사소송절차 등 소송절차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한 번의 재판만으로는 그 진실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진실을 밝히는 문제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된 문제이다.

그런데 재판장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당사자들의 명확한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자료들이다. 당사자들로서는 재판장을 설득할 만한 주장사실을 펼쳐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거나 주장사실을 배척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장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살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해 항변하고 자기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지

만 형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고 증거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한다.

다시말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제기할 때부터 소장원본과 피고의 수만큼의 소장부분을 만들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그러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해주면서 그에 대한 답변서와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를 제출하라고 한다. 피고도 마찬가지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답변서 원본과 원고의 수 만큼의 답변서 부분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부분을 원고에게 송달해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 서로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 이는 그 이후의 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예를들어 사기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고소를 할 때 수사기관에서 보관할 고소장 1부만 제출하게 되고 그 고소장이나 고소인 진술조서는 전혀 피의자에게 송달해주지 않고 열람이나 등사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진술한 진술조서도 고소인에게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피의자는 상대방이 어떤 주장과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저 수사담당자가 질문하는 물음에 답하고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할 뿐이다. 그렇게 하여 불기소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고소인은 항고하거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이다.

이렇듯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나 피의자 등의 제한된 소송기록열람등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그래서 필요한 증거자료도 적절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기록의 열람등사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하여 살

1)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과 법원의 심리과정을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를 따진다면 형사소송의 3대 이념 중 하나가 실제적 진실주의라는 점에서 개개인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펴보고 아울러 피해자의 정보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에게 수사결과 등을 통지해주는 피해자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범죄피해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 또는 위협당한 범죄의 상대방인 본인을 말한다. 여기서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당연히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이지만 범죄의 간접적 피해자인 피해자 본인의 가족,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도 범죄피해자로 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를 입은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모두 일컫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1].

위와 같이 본 논문에서의 범죄피해자는 직접적인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가족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하지만, 범죄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경제범죄, 예를 들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과 성범죄 특히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과 같이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알아야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의 범죄피해자로 주로 이해하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피해자가 잘 모르고 있어도 증거자료가 명백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나 피해자의 주장사실이 크게 피고인의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보다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명백히 상반되어 누구의 주장사실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건(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일수록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외국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3.1 독일의 형사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독일에서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게도 형사기록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서 ‘변호인은 법원에 존재하거나 또는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존재할 소송서류 등을 열람하고 공적으로 보관된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수사의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의 목적이 위태로 위질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소송서류 열람 또는 소송서류의 개별적인 부분들을 열람하거나 공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증거물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4항에서는 ‘중대한 거부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변호인에게는 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제외하고 소송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자신의 집무실로 소송서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도 독일 형사소송법 제406e조 제1항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인은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한 법원에 존재하거나 또는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존재할 소송서류 등을 열람하고 공적으로 보관된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다만 ‘소송서류 등의 열람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우월하고 보호필요성이 있는 이익에 반하면 거부될 수 있고, 수사의 목적이 위태로워 질 우려가 있거나 소송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 형사소송법은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인정하고 있다.

3.2 일본의 형사소송기록 열람등사권

일본은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의 공판 중 소송기록에 대하여도 매우 제한적으로 열람등사를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정을 참작해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2]. 다만 피고사건 종결 후에는 누구든지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일본 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피해자와 가까운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변호인에 대하여 재판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일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4. 소송기록열람등사권의 문제

4.1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공소 제기 후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문을 살펴보면, 우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판 중일 때 피해자 등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장은 즉시 검사,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주어야 하며, 동조 제3항에는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동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재판장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 하면서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열람등사를 한 피해자 등은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2 피해자의 정보권으로서의 소송기록열람등사권

위와 같이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것도 수사단계에서는 전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없고, 단지 기소가 된 후에 피해자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득하여 제한적으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은 민사소송과는 확연히 다른점인데 사실상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나 피의자 등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2.1 민사소송 등에서의 기록열람등사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는 기록열람등사가 아주 자유로울 뿐 아니라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당사자들은 법원에 제출할 원본과 피고에게 송달해 줄 부분을 만들어 제출한다. 민사소송절차를 소제기시부터 살펴보면, 통상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제기를 할 때 원고는 법원에서 보관할 소장 원본과 피고의 수 만큼의 소장 부분을 만들어 법원에 소제기를 하게 되고, 이때 원고는 소장 뒤에 자기의 주장사실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해 주고 그 소장 에 대한 답변서를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한다. 피고도 마찬가지로이다. 피고는 소장

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답변서 원본과 원고의 수 만큼의 답변서 부분을 만들어(증거자료를 포함)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부분을 그대로 원고에게 송달해 준다.

그 다음의 민사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데 예를 들어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항변할 내용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준비서면도 원고는 법원에서 보관할 원본과 피고의 수 만큼의 부분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해 준다. 그 이후에 제출하게 되는 피고의 준비서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민사소송과정에서 원피고가 제출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원본과 부분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해 준다.²⁾ 이는 서로가 서로의 주장사실과 그 증거자료 등을 명확히 알아야 공격권이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실제적 진실이 제대로 발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와 주장 등을 살펴 재판장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1].

4.2.2 형사소송에서의 기록열람등사

형사소송에서는 수사 중에는 기록열람등사가 일체 불가능하며 기소가 된 후에만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을 뿐이다. 수사 중에는 상대방의 진술조서나 제출된 증거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진술조서 조차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다. 등사가 되지 않

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최소한 열람등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피고소인에게 수사상이라는 이유로 그 고소장이나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들을 일체 열람등사해주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신문하고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한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에게 열람등사 시켜주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서로의 주장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가 마무리 되기도 하며, 특히 고소인의 경우 통상 고소장을 접수할 때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 두 번의 추가 조사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어떤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한 번 받은 조사만으로 조사를 끝내고 한 참 있으면 사건이 종결되었다며 불기소통지가 오기도 한다. 그동안 한 번도 수사기관에서는 언제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았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통지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종결되고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다.

고소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야 불기소이유를 알게된다. 하지만 이때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고소인은 할 수 없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보기도 하지만 지방검찰청 검사의 한번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이 사기죄나 횡령죄 등의 경제범죄와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정반대로 나아갈 수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들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의 주장을 펼칠 수

2) 예를 들어 증거신청서, 감정신청서, 기일변경신청서 등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각종 신청이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기일을 변경하는 것 등은 직접적인 주장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고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채택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신청서는 부분을 제출하지 않지만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은 반드시 상대방 수 만큼의 부분을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해 준다.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나 증인 등을 신청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확히 알고 그에 대한 항변과 주장을 펼칠 수 있고, 증거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 소송기록열람등사권의 허용범위

범죄피해자의 형사기록열람은 실제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4]. 수사의 특수성이나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경제범죄와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의 경우와 같이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의 등사는 해주지 않더라도 기록의 열람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제한적으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피의자, 고소인 등 모두에게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알 수 있는 것부터 열람등사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피의자로서는 고소인이 어떤 이유나 증거로 자기를 고소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피해자도 피의자가 어떤 항변을 하는지 또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항변과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³⁾와 제22조의3⁴⁾에서

3) 제22조 ① 검사는 제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정하고 있듯이 기록의 공개로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기타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인 경우나 관련사건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물건의 경우, 그리고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또는 제3자의 보호필요성이 우월한 경우와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3].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열람등사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실제적 진실 발견과 방어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절차에서도 소송기록의 열람등사가 허용되어야 하고, 특히 수사기록의 등사는 어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4) 제22조의3 ① 검사는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신청인이 열람·등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등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등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 내용·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렵다 하더라도 열람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피해자통지 등 정보제공 문제

5.1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제도

범죄피해자에게 있어서 그 피해사건의 진행정도 등 정보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강력범죄피해자나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사이가 특히 좋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2차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가 그 피해사건의 수사정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사건이 기소되었는지 아니면 불기소되었는지, 특히 가해자의 석방여부 등은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급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제도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2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

5.2.1 외국의 동향

미국의 경우 1984년에 이미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The Federal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V WPA)”을 제정하여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각 단계에서의 사건진행경과를 고지해 주도록 하고 있고, 독일도 1986년에 피해자보호법(Opferschutzgesetz: OSG)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그 보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

해자의 권리보호를 맡아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수사단계나 공판개시 때에는 피해자의 뜻에 따른 의견을 적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법 제18조에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 등에 관한 정보제공, 형사절차참여기회의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5.2.2 정보제공의 확대방안

위에서 보듯이 외국의 경우 대부분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수사가 종결되면 검찰에 송치했다는 정도의 정보만 제공해주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여부에 관한 통지를 해 주고 있을 뿐이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몇 번 받았는지, 조사기일은 언제인지, 참고인으로는 누가 지정되어 있고 참고인 조사는 언제 받는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정보를 통지해주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통지해주는 정보는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 및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급에 관한 사실뿐이다.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피해자를 충족할 수 없고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 못지않게 그 피해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궁금해한다. 이에 피해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일자, 송치의견 및 송치일자, 감정 등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감정 신청일자 및 그 결과회신여부, 구속영장청구일자, 구속여부, 기소여부, 공판사건번호, 공판기일 및 장소, 보석청구여부 및 그 결과,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급에 관한 사실 등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만약 담당 경찰관 또는 수사관의 많은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일일이 통지해 주기가 번거롭다면 기소된 사건의 경우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사이트

에서 나의 사건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 중인 사건도 ‘형 번호’로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형 번호’로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다면 담당 경찰관 등이 일일이 사건을 진행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자나 피의자는 언제든지 자기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1].

6. 결 론

본 논문에서 피해자의 정보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다. 첫째는 기록열람등사의 문제이고, 둘째는 소송진행과정에 대한 정보권이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한 번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2차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어느 정도라도 복구하기 위하여 위 두 가지 쟁점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기록열람등사의 문제를 다시 요약해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더 나아가 사건 전체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서로가 주장하는 주장사실과 제출된 증거자료들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언제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처럼 고소인이 제출하는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언제든지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인 진술조서도 마찬가지이며, 고소인도 피고소인의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언제든지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증거자료의 경우 수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등사해 줄 수 없다면 이 또한 열람은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으며, 자기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증인 등 참고인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이념 중 가장 대표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는 반드시 수사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의 특수성이나 개인의 명예훼손, 피해자·참고인 등의 생명·신체의 위협 등을 고려하여 열람등사가 어려운 경우 수사기록의 열람만 가능하게 하고 등사를 제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며, 증거자료는 열람을 불허하고 진술조서 만이라도 열람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개인의 명예훼손, 생명·신체의 위협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개인신분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열람등사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자 등의 소송진행과정에 대한 정보권과 관련된 문제를 요약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송치여부, 공소제기여부, 공판일시 및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금에 관한 사실만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통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위와 같은 정보 이외에도 피의자 진술일자나 구속영장의 청구여부, 보석청구여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여부, 석방일자 등 비교적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피해자 등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자기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고소장 접수일자, 고소인 진술일자, 피의자 신문일자, 참고인 신문일자, 송치일자 및 송치의견(기소, 불기소), 기소여부 및 기소일자, 공판기일 및 장소, 판결선고기일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양경규, “경찰의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경찰학회 보, 제15권, 제1호, pp.157-182, 2013.
- [2]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2007.
- [3] 최병천, “증거개시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4] 김우석,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5] 장승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7권, pp. 217-236, 2010.
- [6] 김보현, ‘일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서울: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연구회 연구개발팀, 2010.
- [7] 조찬영, “일본 형사소송법 상의 공판전정리절차와 증거개시제도의 운용현황 및 이에 관한 논의”, 재판자료 119집-외국사법연수논문집, 제29권, 2010.

[저자소개]



양 경 규 (Kyung-Kyoo Yang)

1998년 2월 학사(계명대학교)
 2000년 2월 석사(계명대학교)
 2008년 2월 박사(계명대학교)

email : yangkk0901@hanmail.net